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2. 3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간척지농업과)

1. 개정 이유

- 간척지활용사업에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87호, 2022. 1. 4. 공포, 2022. 7. 5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간척지활용사업 용도에 임산물 추가(안 제2조제1호~제4호 변경)
 -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의 생산, 가공,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추가
- 나.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 추가(안 제21조 변경)
 -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대상 자격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추가

3. 주요 토의과제

-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(이하 “임산물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각각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”로 한다.

바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
제23조제1항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”을 “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
· 임산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)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.	제2조(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 생산 단지의 용도	1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</u> (이하 “임산물”이라 한다) -----
2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 가공 단지의 용도	2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
3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 저장 단지의 용도	3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
4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 유통시설 단지의 용도	4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조성토지 등의 임대·매각 대상 자격자)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·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	제21조(조성토지 등의 임대·매각 대상 자격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는 자에게 임대·매각하여야 한다.

1. 임대 대상 자격자

가. ~ 마. (생략)

<신설>

바. (생략)

2. 매각 대상 자격자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
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
업경영인(後繼農漁業經營
人)과 「농업·농촌 및 식
품산업 기본법」 제26조에
따른 전업농업인 및 「수
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
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

나. ~ 마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
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
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
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(제3호
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
한다)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
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----.

1. 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
조합 및 중앙회

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

2. -----

가.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
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8조제1항----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의 생산·가공·저장 또는 유통 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 하는 사업 제23조(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)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 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 기간은 5년(<u>농산물·축산물·</u> <u>수산물</u>의 생산·가공·저장· 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 0년) 이내로 한다. ② ~ ④ (생략) 제24조(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 은 업무의 처리) ① 법 제25조 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”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 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<u>농산</u> <u>물·축산물·수산물</u>의 생산· 가공·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 다. ② (생략) 제25조(국가의 지원 등) ① (생 략)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	3.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</u> <u>산물</u>----- ----- ----- 제23조(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농산물·축산물·</u> <u>수산물·임산물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 은 업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농산</u> <u>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5조(국가의 지원 등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
---	---
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<u>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</u>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</u> <u>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</u> ----- -----.
--	--